

소 속	한국석유공사 홍보실		
전화번호	052-216-2225, 2229, 2232	팩 스	052-216-5950
보도일시	배포 즉시	배포일시	2017. 8. 29. 12:00

노동조합 언론왜곡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입장

- 울산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정 관련 -

한국석유공사(사장 김정래)는 지난 8월 28일 공사 노동조합의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왜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공사의 입장을 밝힙니다.

- 한국석유공사 노조가 회사의 보안업무망 사용권한 제한 등에 대해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 결정과 관련,
 - 노조에서는 공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받았음을 홍보 중이고 뉴스타파 등 일부언론에서는 김정래 사장에게 큰 비위가 있는 것처럼 보도 중.
 - 이번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건 심판건을 제외하고 뉴스타파 등 일부언론이 제기한 문제는 이미 ‘16년 9월 노사 분류 시작 이후 노조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비난으로, 그간 국회 및 감사원 등 정부 기관에 수 차례 자료를 제공하고 해명을 했던 사항임.
 - 노조가 제기한 문제는, 공사의 게시판 등 공사의 보안업무망을 노조가 사용하는 데 대한 제한과 및 보안업무망에 노조가 게시했던 몇 개의 게시물 삭제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었으며 이 중 일부를 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것임.

- 동 사안의 이해를 위해서는, 우선 공사의 직원들이 국가보안 유지를 위해 외부와 차단된 보안업무망에 사용하는PC와 인터넷에 연결된 인터넷PC로 구분하여 2대의 PC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.
 - 사용상의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며 직원들이2대의PC를 사용하는 이유는, 업무보안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임.
 - 공사는 그간 관행적으로 노조가 공사의 업무 보안망과 동PC에 노조의 모든 활동과 주장을 자유롭게 게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으며, 김정래 사장은 이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수차에 걸쳐 지적한 바 있음.
 - 관례라는 공사 내부의 주장으로 인해 이런 관행을 변경하지 못하던 중, 과도한 수준의 비방을 포함하거나 공사의 보안업무망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노조의 게시물에 대하여는 게시를 제한하도록 하는 결정을 취하였음
- 노조는 인터넷에 별도 홈페이지도 있고 공사 직원의 인터넷PC 사용을 통한 노조 홈페이지 접속이나 사내 메신저 사용 등에 전혀 제약이 없어, 다소 불편은 하지만 노조의 활동과 운영에는 전혀 제약이 없는 상태임.
 - 또한, 다수의 공공기관과 회사들의 노조는 업무망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홈페이지를 인터넷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, 유독 공사에 특수한 경우라 할 수 없음.

- 공사는 김정래 사장의 이러한 조치가,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인 “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.
 - 공사 업무보안이 중요성이 증대되고 현실을 고려한다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에 관련하여 보안 업무망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터넷 망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보안업무망과 인터넷 망의 분리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

- 공사는, 금번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가 송달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신청취지 인정사유 등 판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, 중앙노동위 재심신청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임.
 -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빌미로 노조에서는 사장퇴진과 연계시키는 등 정치적 공세를 진행 중이나, 김정래 사장은 공사 내부적폐 청산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특히, 분쟁원인이었던 노조의 인사권 개입관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. 끝